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3. 3. 6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제안이유

현 농촌농가에 농기계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례 제정후 대여실적이 전혀없어 조례존치 의의가 없음

주요골자

농산물원종장이 소유하고있는 농기계의 대여와 그에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입제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0. 6. 7 제정된 조례로서 대여실적이 없는 실정으로 동조례가 불필요하므로 동조례폐지.

첨부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1부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농기계대여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